

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<b>제 7조 무주택 등에 대한 특약사항</b></p> <p>① 「주택법」 및 「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」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신청함에있어 본인 및 세대원 전원(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, 결혼예정배우자 포함)(이하“세대원”)의 무주택 또는 소득확인을 위하여 행정전산망 이용에 동의합니다.</p> <p>② 본인 및 세대원 「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」에 따라 □[ 생애 최초 □ 신청일로부터 5년 이상 □ 신청일 현재] 무주택자임을 확인합니다.</p> <p>③ 제2항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(월)세자금,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후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은 당연히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이하생략)</p>	<p><b>제 7조 무주택 등에 대한 특약사항</b></p> <p>① 「주택법」 및 「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」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세대원 전원(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, 결혼예정배우자 포함)(이하 “세대원”), <b>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민법상 미성년 형제·자매(이하 “미성년 형제·자매”)의 무주택, 기금중복대출여부 또는 소득 확인을</b> 위하여 행정전산망 이용에 동의합니다.</p> <p>② 본인 및 <b>세대원 전원, 미성년 형제·자매</b>가 「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」에 따라 <b>[□ 생애최초 □ 신청일로부터 5년이상 □ 신청일 현재]</b> 무주택자임을 확인합니다.</p> <p>③ 제 2 항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(월)세자금,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후에 본인 또는 <b>세대원, 미성년 형제·자매</b>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은 당연히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</p>	<p>버팀목대출 기금중복대출 위반시 회수 조항 신설</p>